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2. 3.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11. 1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일자: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2021.12.3.)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징수과장 윤민선】

### 가. 제안이유

조례 관계법령과 인용법률 명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수수료 감면대상자 추가(안 제6조제1항제3의2호, 제12호)
- 2) 인용 법률 명칭 수정(안 제6조제1항제9호)
- 3)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징수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삭제(안 별표)
- 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수수료 신설(안 별표)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추가된 수수료 감면대상을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추가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며 그 밖에 변경된 인용법령 명칭 등을 수정하기 위해 2021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7일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sup>1)</sup>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수수료를 감면하고,
  - 같은 항에 제10호를 신설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추가된 감면 대상자의 수수료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법령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항 제9호 중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83호, 2021.4.6.)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것임.
  - 그리고 별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와 관련

1)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1. 4. 20.>

하여 표준 수수료에서 제외된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를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련 수수료(신규 신고, 변경 신고 등)를 신설하고 있음. 2020년 6월 4일 시행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2)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애니메이션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새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책정된 수수료 금액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영화업 및 비디오물영업 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바, 유사업종 간 합리적인 수수료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2)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애니메이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항에 따른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